

군무원복지기본법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79
----------	-------

발의연월일 : 2026. 8. 6.

발 의 자 : 유용원 · 김미애 · 박정하
김성원 · 김예지 · 김소희
김기현 · 김태규 · 강명구
윤영석 · 김재섭 · 성일종
이현승 · 주호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국방행정, 군수·정비, 연구개발, 정보화,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국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내 근무, 격오지 근무 및 군사작전 지원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군인의 경우 「군인복지기본법」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복지 관련 기본법을 두고 있는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무원의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무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무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군무원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복지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거지원, 교육지원, 복지시설 이용 등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업무 수행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에 대하여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의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군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마. 군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군 숙소 제공,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군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자녀에 대하여 전학이나 편입학 등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국방부장관은 군무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군인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군무원복지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무원”이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무원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무원이 국가안보와 국방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무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

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무원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무원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군무원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무원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군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군무원의 주거·교육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군무원의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군무원복지위원회) ① 군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무원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무원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무원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군무원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무원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군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거지원 등) ① 국가는 군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군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무원에 한정하여 제공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숙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무원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거지원의 기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군무원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형편상 군무원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무원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

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무원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군인복지시설 등의 이용 등)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복지증진

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군무원 및 군무원가족에게 「군인 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군무원가족의 날) ① 군무원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무원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목요일을 군무원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무원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군무원 복지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